

# 대학원학칙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

2004.3.1. 일부개정  
2004.9.1. 일부개정  
2007.9.1. 일부개정  
2010.3.1. 일부개정  
2011.3.1. 일부개정  
2015.3.1. 일부개정  
2018.9.1. 일부개정  
2019.9.1. 일부개정  
2020.9.1. 일부개정

<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실 >

**제 1조 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 (이하 "학칙"이라 함)이 생명환경과학대학원 (이하 "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 (교육목표)** 이 대학원은 생명산업, 식품산업 및 생물공학과 환경공학분야의 응용연구와 교육을 통해 생산, 가공, 유통분야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동 분야에 있어 탁월한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.

## 제 3조 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

-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(5학기)로 한다.
-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6월 (11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 
다만,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 4조 (수업)**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.

## 제 5조 (재입학의 제한)

-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.
-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(이하 "재입학자"로 함)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③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재입학을 허가한다.

## 제 6조 (전공 변경)

-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 학기초 또는 3 학기초 학적변동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변경된 전공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1. 전공변경 허가원
  2.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
  3. 성적증명서

## 제 7조 (수강신청)

-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 담당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수강신청은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.
- ④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 과목을 5학기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
**제 8조 (수강신청 정정)**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**제 9조 (학점인정)**

-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 (국방대학원, 국방참모대학, 육군대학 등)에서 이수한 과목중 본 대학원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③ 학군 제휴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"학군제휴협약"에 따른다.
- ④ 석사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상위과정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,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- ⑤ 제6조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한 자는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 후 요구하는 전공의 교과목이 같은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인정한다.
- ⑥ 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수료한 대학원(본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대학에 한함)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6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**제 10조 (시험)** 학점의 기본개념인 1 학점 당 주 3시간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설과목에 대한 수시시험,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을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실시한다.

**제 11조 (지도교수)** 석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신청은 제2차 학기 초에 신청하여야 하며,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.

**제 12조 (지도교수 변경)**

-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1. 지도교수 변경신청서
  - 2. 학과 주임교수 및 신.구 지도교수의 승인서

**제 13조 (학위청구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)** 대학원학칙에서 정한 과정보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 (평점 3.0 이상)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 (또는 학과내규에서 정한 연구보고서)을 제출할 수 있다.

-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

**제 14조 (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제출의 연한)**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제출은 3회에 한하며, 학위 청구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제출의 연한은 수료 후 8년 이내로 한다.

**제 15조 (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계획서)**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제5차 학기 초에 논문계획서 (또는 연구보고서계획서)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 16조 (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제출 절차 및 시기)**

- ①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의 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,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6월, 후기는 11월로 한다.
- ③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의 양식, 부수 및 제출시기에 관한 것은 매학기 공고 한다.

**제 17조 (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작성 용어)**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 18조 (자격시험의 종류)**

-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
-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과목으로 시행한다. 그 밖의 외국어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전공시험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.
- ④ 전공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, 불합격한 과목은 재 응시 한다.
- ⑤ 전공시험 성적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- ⑥ TOEIC, TOEFL, TOSEL(A), TEPS, IELTS 등에서 학사내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과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제어학원 영어강좌를 수강하여 B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
**제 19조 (자격시험 응시자격)**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, 전공시험은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.

**제 20조 (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)**

-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 시기는 매학기 초 공고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 21조 (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위원회)**

- ①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,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 22조 (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방법)**

- ①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는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②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 )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 하며, 합격은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③ 불합격된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, 보완하여 6개월 이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**제 23조 (학위수여 심의)** 학과 전공별 해당 이수학점을 이수하고,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 (또는 연구보고서) 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를 심의한다.

**제 24조 (장학금)**

-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 5학기를 초과한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③ 자비로 수학하는 공무원은 수업료 20%를 감면하여 준다.

**제 25조 (공개강좌)**

- ① 이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
**제 26조 (연구생)**

- ① 이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-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할 허가한다.

**제 27조 (연구기간 및 연구과제)**

-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
**제 28조 (대학원위원회의 회의)**

- ①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.
- ② 그 밖에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"위원회설치운영 규정" 을 준용한다.

**제 29조 (준용)** 이 시행세칙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고려대학교 학칙」, 「학사운영 규정」, 「대학원 학칙」과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을 준용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제18조6항의 외국어시험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- 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
  - ① 개정된 제1조, 제5조2항, 제11조, 제14조 규정은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.
  - ② 신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전 입학생들도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교과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.
  - ③ 신 교과과정에 의하여 폐지된 논문세미나 (공통필수)는 각 학과에서 요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이를 공통필수로 인정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 
단, 제7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 개정사항은 2011년도 3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, 제14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9조 6항 개정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3조 제1항, 제29조 신설)
2. (적용대상) 제13조 1항은 2017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